

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폐지이유

성병보균자를 격리수용하여 완치시킴과 동시에 그들에 대하여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성병관리소가 주한 미군의 철수 및 외국인 전용 관광업소의 격감, 일반의료기관의 진료기술발달로 격리수용 대상자가 없고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도 정원이 감축되었기 동 관리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파주시조례 제 호

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 (1996. 3. 1. 조례 제106호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병환자를 격리수용 치료하기 위한 성병관리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위치 및 관할구역) 성병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파주시 성병관리소	파주시 아동동 345	파주시 일원

제 3 조(기능) 이 성병관리소는 관내 유엔군 주둔지역의 집대부들중 성병보균자를 격리수용하여 완치시킴과 동시에 그들에 대하여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성병의 예방 및 치료
2. 성병환자에 대한 공중보건 및 교양교육

제 4 조(소장) ①성병관리소에 소장을 둔다.

②소장은 산부인과 또는 피부비뇨기관 전문의로서 1년 이상 공중 보건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한자이거나, 일반의로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보한다.

③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.

제 5 조(공무원) 성병관리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(시설) ①성병관리소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.

1. 진료실
2. 치료실
3. 검진실
4. 검사실
5. 입원실

6. 취사실

7. 식당

8. 대합실

제 7 조(수용 대상자) ①성병관리소에는 관할구역안의 성병진료소에서 검진한 결과 낙검된 다음 성병보균자를 수용한다.

1. 임균보균자

2. 매독보균자

3. W. B. G4(+)이상으로서 세포의 그램 음성 쌍구균의 존재가 확인된 자

②제1항 각 1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성병질환자는 이를 검진한 성병진료소에서 치료한다.

제 8 조(수용신청) ①성병진료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성병관리소장에게 수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성병관리소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낙검증 소지자에게 수용명령을 발하고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한다.

③성병관리소장은 수용명령을 받은 낙검증 소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치료할 수 있다.

제 9 조(수용해체) ①성병관리소장은 완치된 환자에 한하여 퇴소시켜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성병관리소장은 퇴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경우에 성병관리소장은 퇴소자의 검진증을 보관하고 있는 성병관리소장에게 건강증 발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검사증 낙검증 및 건강증의 교부) ①성병진료소장은 검진결과 낙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낙검증을 발급하고 그의 검진증을 회수 보관하여야 한다.

②성병진료소장은 낙검자가 성병관리소로부터 성병을 완치하고 퇴소한 때에는 보관하고 있던 검진증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과 교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대장비치) ①성병관리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료용구 대장을 비치하고 의료용구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- ②성병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 약품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의료용구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성병관리소장은(성병진료소장 포함)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④성병관리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성병진료부를 비치하고 수용환자에 대한 진료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